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3. 3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3월 2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3월 31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의택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청사 12층 강당이 하늘도서관으로 조성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에서 12층 강당을 삭제하고, 사용료 부과기준 등의 용어를 정비하여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'구청사 12층 강당' 삭제(안 제3조제1항제4호)
- 2) 시설물의 용도에서 12층 강당의 용도였던 결혼식장 삭제(안 제3조제2항)
- 3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○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청사 12층 강당이 폐쇄되고 도서관으로 변경됨에

따라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'구청사 12층 강당'을 삭제하고(안 제3조제1항 제4호)

- 시설물의 용도에서 12층 강당의 용도였던 결혼식장을 삭제 (안 제3조 제2항)하는 등
-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시설물 정비 및 사용료 부과기준 등의 용어를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하여,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